

◎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단 공고 제2020-01호

**2020년도 제1차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단  
신규지원 세부과제 공고**

2020년도 제1차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단 신규지원 세부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단 사업단장

**<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

<b>비전</b>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b>미션</b>	스마트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서비스 확대와 의료비 절감		
<b>사업 목표</b>	스마트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지역사회 현장 적용		
<b>추진 전략</b>	수요자 참여형 연구개발 체계 마련 (Launching & Development)	타 부처와의 연계·협력 강화 (Connect&Development)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Data-driven&Development)
<b>추진 분야</b>	①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②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발		

□ 사업목적

- 국민 건강관리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일차의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발 지원

□ 세부내용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인구집단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중재점 도출 및 ICT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발·실증 지원
-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개발)**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의 스마트 기술 기반 고도화, 대상 질환 확대를 위한 신규 모델 개발·실증 지원

## I. 공고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구분	공고단위 (RFP명)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대상	선정예정 과제수 (이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 모델 개발	· 600백만원 이내/년 (1,2차년도 450백만원)	· 3년 이내 (1,2차년도 9개월)	학,연,병	1
	사업장 근로자 대상 건강관리체계 모델 개발	· 530백만원 이내/년 (1,2차년도 400백만원)	· 3년 이내 (1,2차년도 9개월)	산,학,연,병	1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서비스 모델 개발(사전기획)	· 150백만원 이내	· 9개월 이내	산,학,연,병	2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개발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환자 모니터링 고도화 모델 개발	· 700백만원 이내/년 (1,2차년도 500백만원)	· 3년 이내 (1,2차년도 9개월)	산,학,연,병	2
	만성질환관리 신규 서비스 모델 개발(사전기획)	· 150백만원 이내	· 9개월 이내	산,학,연,병	3

## II. 신청요건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신청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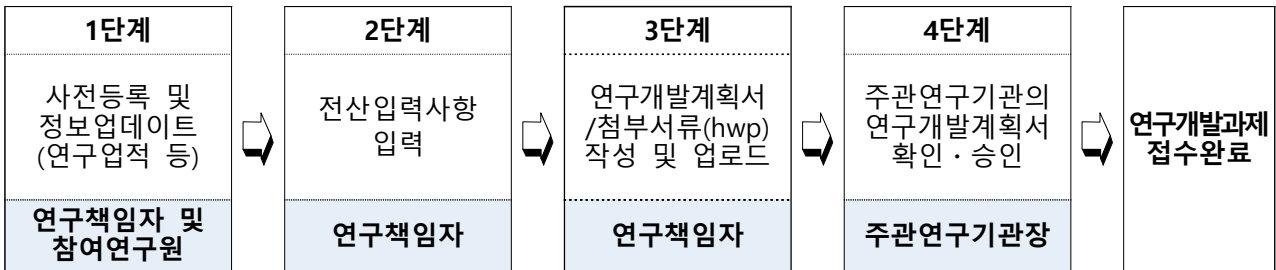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 연구 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

### Ⅲ.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 ※ 연구자(연구기관)는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미 등록된 경우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

#### □ 서류제출기한

- ※ 공고단위(RFP)별 신청마감시간(18: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 공고단위별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 시스템(www.htdream.kr)'에 공지함

구분	공고단위 (RFP명)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전산입력) 마감일시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또는 공문제출) 마감일시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 모델 개발	2020. 7. 23. (목) 18 : 00	2020. 7. 23. (목) 18 : 00
	사업장 근로자 대상 건강관리체계 모델 개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서비스 모델 개발 (사전기획)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개발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환자 모니터링 고도화 모델 개발	2020. 7. 23. (목) 18 : 00	2020. 7. 23. (목) 18 : 00
	만성질환관리 신규 서비스 모델 개발(사전기획)		

## IV.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관련규정은 [www.htdream.kr](http://www.htdream.kr) → 자료실 → 관련법규에서 확인

## V. 기타

- 참여기업 부담금(세부과제별 산정)

※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항목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총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상	총 연구개발비 대비 40% 이상	총 연구개발비 대비 25% 이상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부담액의 15% 이상	부담액의 13% 이상	부담액의 10% 이상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현물 부담액의 70% 이내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 이내	-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총 연구개발비 대비 40% 이상.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25% 이상으로 함

※ 그 밖의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을 1명 이상 신규채용시,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

※ 단,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세부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5억원당 1명)” 초과 채용 시 적용  
(예 : 5억원 과제 -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 10억원 과제 - 3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

##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도입 심의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을 작성·첨부하여 '과제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실시(선정과제 별도 안내)

##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사업단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함
  - 연구개발목표를 성취한 실용화 과제 중 영리기관에 한해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 비영리법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면제, 대상과제는 RFP에 표기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 관련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

## VI. 문의처

### ○ 홈페이지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
- 사업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www.khealth.or.kr)

☞ 문의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단 담당자 이메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단위(RFP)별 담당자 안내

구분	담당자	연락처
사업내용(RFP) 안내	이준복	02-3781-2277 / nanaya@khealth.or.kr
평가(일정/절차) 및 연구비 안내	김미휘	02-3781-2273 / mh_kim@khealth.or.kr